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99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 평가에 대비하여 사고조사 분야 국제 기준(부속서 13)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그간의 사고조사 업무수행 관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 명확화(안 제1조)

목적 조항에 해당 법률 제명만 명시하던 것을 법령 위임 조항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규정임을 표현함
나. 사고조사 관련 전문용어의 의미 명확화 및 순화(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 1) 현행법에 맞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 명확화(안 제4조제4항)
- 2) 위원회 회의안건을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안 제8조)
- 3) 위원회 심의·의결회의록 관리 근거·방법 추가(안 제14조제2항)
- 4)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사무분장 등 명확화(안 제15조, 별표 1)
- 5) 사고조사관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16조, 별표 2)
- 6) 사고조사관 인력산출기준 마련(안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의2)
- 7) 사고조사인력 양성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8) 사고조사관 임명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 9) 수석조사관 제도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 10) 항공 분야 안전관리자 제도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 11) 법령에 맞게 위임·전결사항 수정(별표 4)

라. ICAO 국제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체계 재정비(안 제17조, 별표 3)

- 1) 직무별 교육훈련의 대상, 내용 등 명확화
- 2) 신규임용 공무원(전문임기제 포함)의 윤리, 청렴, 행동강령, 경비 등 ‘공무원 기본 소양교육(10시간)’ 과정 신설(별표 3 제1호)
- 3) 교육훈련 과정별 정의를 ICAO Cir 298 내용을 반영해 표현 수정
- 4) 교육훈련 과정 간 공통·유사 과목 통합 등 교육 운영 효율화
- 5) ICAO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OJT 교육생에 대한 평가 근거·방법

마련

- 6) 정기교육훈련의 인정 유효기간 기준, 인정 범위 확대 및 미이수 시 자격효력 정지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제3호·제4호)
- 7) 사고조사관 재자격 부여 기준 개선(안 제17조제3항제3호)
- 8) 사고조사 교육 방법 및 전파교육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0항)

마.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명확화

- 1) 법령의 항공사고조사 범위 보충(안 제20조)
- 2) 문장 성분 간 불호응 오류 수정(안 제21조제1항·제2항, 별표 5)
- 3) 사고접수 방법 및 절차 개선(안 제22조)
- 4) 항공기 사고 통보범위 명확화(안 제23조, 별지 제9호~제10호)
- 5) 국내 관계기관 연락처 관리 내용 신설(안 제23조제7항 신설)
- 6) 사고조사 수행 주체 명확화(안 제30조제1항)
- 7) 사고조사의 재개 절차 명확화(안 제31조)
- 8) 항공 분야 최종보고서의 서식 및 공표 시기·방법 등을 항공기용·약식용으로 구분·사용 절차 마련(안 제44조)
- 9) 비행기록장치 해독·분석 지침 개정(안 제51조제3항, 별표 6)
- 10) 법령에 따라 항공기·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등의 업무를 국내외 전문가·전문기관에 의뢰 시 세부 기준 마련(안 제51조제4항)
- 11) 사고조사 참여 외부참가자의 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57조)
- 12) 항공사고 표시 약어를 부속서 기준과 일치(안 별지 제10호서식)

13) 법과 ICAO 국제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이메일(iktwr@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화: 044-201-5449, 팩스: 044-868-24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